

#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정준호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29명이 공동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본 조례는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와 관련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사육포기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.

□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
‘사육포기 동물’, ‘동물학대’, ‘기질평가’의 정의(안 제2조)와 사육포기 동물 인수 대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(안 제18조) 하였습니다. 또한 동물 보호비용의 부담 및 소유자등의 징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(안 제19조)하고,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과 관련하여 수행할 수 있는 범위로 사육포기 동물 및

기질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(안 제24조)하였습니다.

-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